

제2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0. 4. 1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31호로 2021년 4월 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행정안전부로부터 산정된 국가시책사업 추진 및 행정수요에 따른
일반직 증원과 직종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개정(안 제2조)
 - ‘1,473’을 ‘1,476’으로 개정(증 3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446’을 ‘1,449’로 개정(증 3명)
- 정원의 직급별 정원표 개정(별표 3)
 - 총 계 : ‘1,473’을 ‘1,476’으로 개정(증 3명)
 - 일반직 계 : ‘1,468’을 ‘1,471’로 개정(증 3명)
 - 일반직 5급: ‘65’를 ‘66’으로 개정(증 1명)
 - 일반직 6급 이하: ‘1,391’을 ‘1,393’으로 개정(증 2명)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행정안전부에서 산정 통보한 기준인건비 내에서 시행

1) 소요예산액

(단위:천원)

합계	국비	시비	구비	비고
78,693	-	-	79,693	

2) 세부내역

- 채용인원: 3명(7급 2명, 8급 1명)

(단위: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합 계	79,693	
기본급(봉급)	45,890	7급, 8급 각 직급 3호봉 기준
직급보조비	2,790	월 직급보조비 (임기제7급 165천원, 7급 155천원, 8급 145천원)
국민건강보험금	2,230	보수월액의 3.43% 부담
연금부담금 등	10,769	연금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수 당	18,014	- 가족수당 : 720천원 - 시간외근무수당: 10,854천원 - 정액급식비 : 2,340천원 - 명절휴가비 : 2,363천원 - 연가보상비 : 837천원 - 기술업무수당 : 900천원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구성으로 조직의 운영 건전성을 제고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직종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 본문의 개정사항은 공무원의 총 정원수를 현재 1,473명에서 1,476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기준인건비 1,321억 원 내에서 3명을 증원하려는 것이며,
 - 안 별표3 직급별 정원표에서는 안 제2조에서의 증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3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 이는 반려동물 전담인력 1명, 감염병 대응인력 2명, 도시계획 업무 강화 및 전략사업 발굴 인력 3명을 보강하여 6명이 증가되고, 농림운영, 사무운영, 시설관리직 각 1명씩 3명의 자연감소분 정원 감축에 따라 총 3명의 증가가 되는 것임.

○ 검토결과,

변화된 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준인건비에서 승인된 총액 내에서 반려동물 전담인력, 감염병 대응 역학조사, 도시계획 업무 강화 및 전략 사업 발굴 추진을 위하여 신규 총원하는 것으로써, 2021년도 우리 구의 기준인건비 총액은 1,321억 원이고, 예산편성액은 1,286억 원이며, 신규 증원되는 3명의 인건비는 연간 7,969만 원으로, 개정안에 따른 인력증원 이후에도 구의 총인건비는 기준인건비 내에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 ‘2021년도 기준인건비 및 예산편성현황’ 참조)

【 불 임 】

2021년도 기준인건비 및 예산편성 현황

□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 132,070,648천원

□ 영등포구 예산편성금액 : 128,599,167천원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총 계	128,599,167
101 인건비	103,511,881
101-01 보수	80,635,364
101-02 기타직보수	9,302,226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3,574,291
204 직무수행경비	3,213,107
204-02 직급보조비	3,213,107
303 포상금	4,648,712
303-02 성과상여금	4,648,712
304 연금부담금등	17,225,467
304-01 연금부담금	13,861,613
304-02 국민건강보험금	3,363,854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회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회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제2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1. 4. 1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32호로 2021년 4월 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안의
지급 대상과 지급 범위 등을 개정하여 본 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통장자녀 장학생 자격 및 지급 기준 정비(안 제3조)

나. 장학생 정원 규정 정비(안 제6조)

다. 장학금액 정비(안 제7조)

- 장학금 지급대상자에 따른 장학금 정액 규정

라. ‘자치법규 입안 지침’에 따른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2021. 3. 11. ~ 3. 31./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통장자녀 장학금 제도 관련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통장자녀 장학금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현행 조례의 제2조(장학금의 종류)를 유공장학금과 특기장학금으로 구분하던 것을 삭제하였음.
- 안 제3조(장학생의 자격)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따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통장의 자녀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외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를 받거나 받을 예정일 경우에는 지급을 제외하되

단서규정으로 본 장학금 액수보다 다른 장학금 액수가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부서에서 다른 장학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인지 의문이 있음.

- 안 제6조(장학생 정원)에서 장학생의 정원은 예산을 고려하여 영등포구의 통장 정원의 15퍼센트 범위 이내로 정하였음. 2021.4.10. 기준 통장 정원은 583명, 통장 현원은 574명으로 정원의 15%는 87명에 해당됨.
- 안 제7조(장학금)는 매 학기별로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정액지급하려는 것은 무상의무교육 대상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정액 지급 가능 규정을 마련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함.
- 안 제9조(지급정지)에서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 통장 사직, 부정수급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정지에 추가하여 환수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으나 제1항제1호의 통장이 사직하거나 해촉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직을 그만둔 경우 외에는 부서에서 확인이 어려워 제3조제2항과 마찬가지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임.

○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통장·이장 자녀장학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 방안에 따라 우리 구 통장자녀장학금 대상자 및 금액을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집행부에서는 타 장학제도 등과 비교하여 장학금 적정여부, 중복제한 규정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임.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2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훈령]

301 일반보전금 02. 장학금 및 학자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

- 통·리장 자녀,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자 등에 대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따른 기준 공납금 참고)

제2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1. 4. 1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33호로 2021년 4월 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진흥협의회를
두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정 목적 및 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나.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위원의 임기 및 의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라.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2021. 2. 15. ~ 3. 7./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체육정책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총 9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 경위를 살펴보면

- 영등포구는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협의회조례」를 1990.3.20. 제정하였으나 조례 제정 이래 협의회의 운영 실적이 없고 영등포구 체육회와 영등포구생활체육협의회가 위 활동을 실행하고 있어 2009.7.30. 폐지한 바 있음.
- 이후 2016.3.28.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되고 특히 이번에 체육정책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이 의무조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은 시기적절하다고 사료됨.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체육진흥 계획 수립 및 자문에 관한 사항 등 협의회회의 임무를 명시하였고
- 안 제3조는 협의회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의장은 구청장으로, 부의장은 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였음.
-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의장과 부의장의 직무 등을, 안 제6조는 협의회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협의회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와 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기존에 임의기구였던 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체육회간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2021.6.9. 시행 예정으로 이에 맞춰 조례를 제정하고 조직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시행으로 체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체육복지 증진 및 영등포구의 체육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됨.

참 고 자 료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1.6.9.]

-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